

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

동의연월일 : 2015년 3월 3일

동 의 자 : 윤 은 희 의원

찬 성 자 : 정 영 수 의원

주 문

-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함.

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내실있는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회의 결과를 공유하여 의정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귀국 후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여행보고서 제출기한 변경(안 제10조)
 -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

의안전문: 붙임

